

붙임 2)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가평썰매장 식당(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친절서비스) 공공시설내의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의 종류 및 가격)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개시 7일 전까지 식당(매점)에서 취급할 음식 및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음식 가격 책정은 가평군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음식 가격에 준하여 공단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용인은 물품 및 음식의 질과 양에 있어 이용객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품의 종별 및 가격을 모든 이용객이 볼 수 있도록 식당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용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용인은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한다.

⑤ 음식물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식당내부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사용인은 가평썰매장 운영기간에 맞추어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여야 하며, 식당(매점) 운영시간에 의해 이용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지정 통보한 휴무일에는 휴무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유지) ① 사용인은 식당(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설 및 집기를 수시로 살균 소독과 주변을 정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식당(매점) 종사자에게 항상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식단 작성, 조리 및 위생상태,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상해 발생에 대한 보상) 사용인이 식당(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및 음료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용인은 조건 없이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무를 진다.

제7조(시설관리 및 경비부담) 사용인은 식당(매점)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가스에 대한 사용료 일체를 부담하고, 식당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인이자부담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용에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온수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도난 및 손괴방지) 사용인은 식당(매점)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난, 손괴 등의 발생 시 공단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 사용인은 식당(매점)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등을 사용 개시 전일까지 완료하고 합리적이고 적법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상 상해(부작용 포함)가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사용인에 의하여 공단의 명예가 크게 손상하거나, 이용객에게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4. 기타 사용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민원처리) 사용인은 식당(매점) 운영에 관한 민원 발생 시 3일 이내 대책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 및 원상복구) 사용인은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

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시 공단에서 원상복구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인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단 및 다음 사용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권리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시설 및 설비의 원상 복구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며 사용허가 기간 종료 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단 소유로 하여 대가성 없이 존치 하도록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종료 시의 재산 반환)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종료와 동시에 일체의 시설물이 원상태로 반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하여야 한다.

제14조(잡상인 단속) 가평썰매장 내의 잡상인 및 도시락 판매 행위는 공단에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식당운영 제한) 가평썰매장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일수 변경, 운영시간 증·감 및 시설의 축소 또는 확대 등 변경사유가 발생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식당(매점) 운영기간 연장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6조(인수인계) 신규 사용자는 가평썰매장 시설물(비품 포함) 이외에 기타 식당(매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이전 사용자와 협의하여 인수한다.

제17조(기타) 사용자는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